「교목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2004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5/compare?from=70&to=6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4:13:2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, 교목부장,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, 전도사들, 생활교육관장(2),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.	**제3조(구성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,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, 전도사들, 교육관장들, 학과 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,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, 서기는 위원들 중 1인을 임명한다. 3. 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결원 시 보선한다.
제4조(회의 소집) 정기 회의는 매월 1회(첫째 토요일 저녁)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.	**제4조(회의 소집)** 정기회의는 매월1회(첫째 토요일 저녁)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.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 1.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.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 3.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 4. 신앙 상담 활동 지원 5. 소그룹 수련회 운영 6. 교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 지도 및 지원 7.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8.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 9. 침례식 지원 10. 사경회 개최 11. 전도회 개최 12.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 13. AY (청년선교회) 활동 지원 14. 절제회 활동 지원 15. 교목실 예산 16. 기타	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 1.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. 2.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. 3.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. 4. 신앙 상담 활동 지원. 5. 소그룹 수련회 운영. 6. 교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. 7.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. 8.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. 9. 침례식 지원 10. 사경회 개최. 11. 전도회 개최. 12.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. 13. AY(청년선교회) 활동 지원. 14. 절제회 활동 지원. 15. 교목실 예산. 16. 기타.
제7조(운영 세칙)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	**제7조(운영 세칙)**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를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